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	------

변경사항	구분	영업자 (생년월일)	상호	제품품목 (제작업자)	취급품목 (배급업자)	영업소 소재지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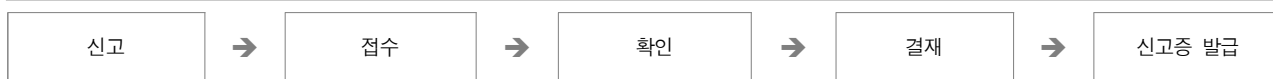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신고증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제품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특별자치도·시·군·구 조례 가 정한 금액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시·군·구 담당 부서)